



2023. 05. 18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전 2023노310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4.가. 전우영 -----



항 소 인
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 11. 선고 2021고단350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5. 17.

주 문

원심판결 중 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검사의 전우영, 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
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나. 검사(피고인 전우영, 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원청업체인 소속 안전
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같은 소속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전우영에게 하수급
인인 주식회사 [] 담당하는 개별 작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
업순서·작업방법 및 안전조치에 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하수급인 근로자
들에게 교육하며, 그 내용대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에 따른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단근거를 자세히 실시하면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청업체인 소속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같은 소속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전우영에게 하수급인인 담당하는 개별 작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순서·작업방법 및 안전조치에 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하수급인 근로자들에게 교육하며, 그 내용대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형틀팀장인 피고인 등은 콘크리트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해제 작업 시 낙하.

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약 3개월의 구금생활을 거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와 함께 피해자 유족에게 함께 7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피해자 유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

부분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
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
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 전우영,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피고인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
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 형법 제40조, 제50조



재판장	판사	김형한	_____
	판사	이호선	_____
	판사	배종빈	_____

등본입니다.

2023. 5. 18.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보 강 효 정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